

直領에 관한 研究

金 美 子*

A Study on Jik-Ryoung(直領)

Mi Ja, Kim

<목 차>

- | | |
|---------------|-------------------|
| I. 서 언 | A. 조선왕조 초기의 직령 형태 |
| II. 문헌고찰 및 분석 | B. 조선왕조 중기의 직령 형태 |
| A. 고려의 직령 | C. 조선왕조 후기의 직령 형태 |
| B. 조선왕조의 직령 | IV. 결 언 |
| III. 직령의 형태 | |

Abstract

Jik-Ryoung was originally designed to be worn by lower-class people in the reign of King Woo(A.D 1387, Goryeo) when official dresses and headgear were redesigned according to Ming's (明) style.

It was observed that Jik-Ryoung was the same Po(袍) as Dan-Ryoung(團領) except its straight collar.

Nowadays we can find through documents and original forms of Jik-Ryoung itself that Jik-Ryoung prevaile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Yi Dynasty.

Lower class people wore this coat until King Sejo (世祖), but from that time the Jik-Ryoung could be worn only by the Noble class as street clothes and home wear as well.

Middle class people wore this coat as an office wear.

Its style had changed from narrow sleeves and Moo (무, a reinforcing cloth strip) at the beginning to widens and Moo after the middle years of the Dynasty and finally fixed its style to sewing upper parts of Moo together.

While red, white, and blue were the common colors, silk, hemp, cotton, and ramie were preferred materials to be made of.

되는 袍이다.

I. 서 언

본 연구는 直領에 관한 연구로, 直領이란 옷 것이 곧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團領에 대응

조선왕조 중기와 말기의 직령 실물을 보면 단령과의 차이점은 옷깃이 곧고 둥글다는 점뿐이다. 말기 홍직령의 형태는 옷깃은 곧고 소매는 단령과 같이 넓은 두리소매이고, 무도 단령

* 서울女子大學 家政學科 助教授

과 같이 여분의 것이 뒤로 돌아가 접혀진 것이었다.

옷길을 말할 때 곧은 것을 直領이라고 하므로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옷길이 곧은 袍를 直領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필자는 直領은 한 개의 독립된 袍라고 주장한다. 직령에 관한 最古의 기록은 高麗 辛禱 13년에 明制에 의해 단행한 冠服 개정시 보이며, 5년 후에 조선왕조가 세워졌고,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착용한 기록과 실물이 있다. 신분면으로 왕에서 서민까지 착용했고, 용도면으로 平居服, 團領의 裏衣, 出入服, 書筵服, 冠禮服, 喪服, 별감 향리 소친시의 常服 등으로 착용되었다. 고찰대상은 문헌, 실물, 풍속도 등이며 주요 출처는 창덕궁과 충북대학박물관이다.

II. 문헌고찰 및 분석

直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禎王 13년(1387년)에 단행한 冠服改定 때 보이며, 이 관복 개정이 있는지 5년 후에 조선왕조(1392~1900)가 세워졌다. 직령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말기까지 착용된 기록을 王朝實錄,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增補文獻備考, 大典會通 및 많은 학자들의 文集 등(표 1 참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고려의 직령에 대해 먼저 고찰한 후 조선왕조는 용도면·신분면으로 분류 고찰한다.

A. 高麗의 直領

고려 말기(恭愍王 이후)의 사회상과 신분제도를 먼저 살펴보자.

“공민왕 13년(1364)에 朱元璋이 江南에서 뭇나라 왕을 칭하게 되었고 元나라는 쇠망기였다. 공민왕은 원나라 연호의 사용 중지 또 그들에게서 강요당했던 여러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는 등 원나라에 노골적으로 반항하였다. 공민왕 17년(1368) 주원장이 명의 황제가 되어 이를 고려에 통고해 왔으므로 이듬해 왕은 사신을 보내 태조의 등극을 축하하고 祭服을 청하고 책봉을 받았

다. 명태조는 공민왕 19년 5월에 왕의 冕服과 遠遊冠 및 群臣의 祭服을 사여하였다. 한편 漠北으로 도망간 순제는 北元이라 칭하였고, 공민왕의 뒤를 이어 우왕이 즉위한 고려 조정은 친명파와 친원파로 분리되어 심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¹⁾ “禎王은 12년(辛禱 12년 1386) 8월에 鄭夢周를 京師에 보내어 왕의 便服(常服)과 群臣의 朝服과 便服을 청했으나 明은 고려의 풍속을 따르라고 했다. 같은 해 8월에 다시 衣冠을 청하는 表를 올렸으며, 이듬해인 13년 5월에 僂長壽는 明帝가 하사한 紗帽 團領을 입고 돌아왔고, 같은 해 6월에 冠服改定을 단행했는데 明의 制度를 따랐다. 이때의 服은 團領과 直領으로 大別됐다.”⁽²⁾ 고려 때의 身分階級은 대략 3계급으로 구분된다. “官人階級은 지배계급으로 文武官 正職에 취임할 수 있는 양반, 궁중의 內僚職에 취임할 수 있는 南班 및 醫卜·地理·律算 등 技藝로써 任官하는 雜岐 또는 使役으로 任官하는 小僚인 雜職에 취임할 수 있는 부류인데, 남반·잡기·잡직의 승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庶人은 農民과 軍丁이다. 남반·잡기·잡직 외의 良人을 말한다. 下流階級인 천인은 驛丁·津尺·楊禾尺·才人·商人·工匠·樂人·部曲 및 奴婢 등이다. 庶人의 주축은 農民으로 軍丁을 겸하였고, 그 밑에 商·工 기타의 賤役은 천인계급으로 멸시되어 서인과 천인은 官人階級의 지배와 수탈을 당했다.”⁽³⁾

冠服改定時의 直領에 관한 기록을 보면, “祿官 仕時同三館 各領尉正은 坎頭와 高頂笠을 쓰고 直領을 입고 纏帶를 매었으며 白甲을 입었고 飯房, 水房, 燈燭上所(주로 궁중의 등축을 맡은 사람)들은 高頂笠과 坎頭와 氈帽를 쓰고 直領을 입고 纏帶를 매었으며, 工·商 및 百姓은 비록 有職者일지라도 高頂笠을 쓰고 直領을 입었고, 絲帶·纏帶를 매었다. 또한 첫머리에 밝힌 것은 明制에 의거하여 胡服, 즉 元制를 개혁한다는 것이었다.”⁽⁴⁾ 이때 직령을 착용할 수 있었던 계급은 庶인과 賤人階級이었고, 단령은 하층계급 중에서 후 착용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상류 계급이 착용토록 규정되었다.

(1)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 知文閣, 1965.

(2)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73, pp.86~89.

(3) 韓國文化史大系 II,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李熙鳳, “韓國法制史”, pp.186~188.

(4) 高麗史(中) 志卷 第二十六 輿服, 아세아문화사, 1972, 「始革胡服 依大明制」, p.567.

B. 朝鮮王朝의 直領

1) 身分面으로 본 直領

“조선왕조의 신분제도는 고려의 신분제도를 원형으로 하고 있지만 한층 분화되어 한 계층에도 여러가지 인습적인 차별이 있고, 계층과 계층의 중간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크게 兩班·中人·常人·賤民의 4 계급으로 구분된다. 양반은 가장 높은 신분으로 유교를 업으로 삼고 아무 제한 없이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신분이며 중요한 관직과 특권을 독점했다. 증인은 醫·譯·籌·律·觀象·寫字·圖畫 등 기술사무를 맡은 세습적인 하급관리와 吏校, 즉 吏書(衙前)와 軍校이다. 常民(常人)은 백성·상사람·良人 등으로 불렸고 農·工·商에 종사하며, 납세·貢賦·軍役을 담당했다. 천민은 천역에 종사하는 가장 낮은 신분으로 노비·백정·승려·倡優·巫覡 등이다. 이 신분제도는 갑오경장 이후 타파되었다.”⁽⁵⁾ 그런데 “法典에 士大夫·士族·庶人·良人 또는 常民 등의 용어가 보이는데 士大夫는 現職의 顯官을 말하고 士族은 兩班階級을 말한다. 그러나 庶人和 常民의 개념이 분명치 않아 庶人(서민)은 때로는 無位의 士族을 포함하고 中人·鄉族·良人까지 지칭하기도 하며, 常民은 鄉族·良人 및 賤人까지를 통칭하는 것 같다.”⁽⁶⁾

① 왕족과 양반의 直領 착용

太宗 8년 5월 李太祖 승하시 百官과 內官의 喪服으로 直領을 착용했다. 즉 “內官은 白頭巾·斬衰直領·生麻帶·白皮鞋·布裏笠·白笠이고, 文·武百官은 布裏紗帽·斬衰直領·生麻帶·白靴·布裏笠·白笠”이었다. 세종 28년 3월 王妃喪制 때는 世子の 斬衰服으로 卒哭 前에 進見할 때에 白直領衣·黑草笠·黑條兒·白靴⁽⁷⁾를 착용하였

다. 이후 백관과 왕세자의 喪服으로 直領은 착용되지 않았다. 世祖 2년 6월 “世祖가 중국 사신 金興에게 黑細麻布 直領과 團領 각 一領과 白細苧布 帖裏 二領……”⁽⁸⁾을 주라고 했다. 세종 31년에 발표한 禁制 조건에 직령은 庶人·工·商·賤隸·별감 등의 옷으로 제정됐지만 세조 때는 양반계급도 입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선조 때는 “順懷世子가 東宮 때 書筵服으로 紅直領을 입었으며,”⁽⁹⁾ “李壑雜記에는 土紅을 上服으로 여겨 土紅直領은 士大夫의 燕居服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士人 중 無職者는 紅衣直領을 입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¹⁰⁾ 또한 芝峰類說에 “우리나라 儒士는 私出入時는 紅直領을 착용하였는데 明宗 말년에 國喪이 계속되어 白衣를 착용한 것이 습관화되었다”⁽¹¹⁾고 있다. 효종조 이전에 白色 禁制令을 내렸던지 “효종조에 禁制가 점점 해이해져 直領과 白靴를 착용하고 있다”⁽¹²⁾고 했다. 아마 白直領이 유행했던 것 같으며, 계속 착용되었음을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바느질이 정교한 白直領 실물로 짐작할 수 있다.

영조 때는 “훈련대장이 天翼을 입지 않고 출입함을 타하는 좌의정 말에 왕이 이후부터 武臣이 文臣服인 直領 입는 것을 엄히 다스리라고”⁽¹³⁾했으나 武臣들이 계속 착용했던지 正祖 때도 “先祖에는 엄하게 武弁의 직령 착용을 금했다. 武弁의 服色은 直領이 아니다...”⁽¹⁴⁾라는 兵曹判書의 상소문이 있었다. 韓元震(1682~1751)의 남당초고에 士子の 出入上服은 直領이라고 있으며, 증보문헌비고(정조 6년 간행)에도 士大夫의 燕居服은 直領·深衣·道袍·帖裏·方衣라고 있다. 순조 때는 直領 대신 도포가 많이 착용되었다. 즉 “옛날에는 사대부의 平居服은 직령이었으나 요사이는 도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직령도 계속 착용되었음을 “正祖의 櫛宮衣櫛에

(5) 이흥직 편, 국사대사전, “신분제도”.

(6) 앞책, 李熙鳳, “한국법제사”, p.191.

(7) 태종공정대왕실록(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판, 1974), pp.250~251. 太宗實錄, 太宗 8년 5월 卷十五 二十九 B~三十장

(8) 세조실록 2권(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국역판), pp.44. 世宗實錄, 世祖 二年 6월 卷四 十七장

(9) 宣祖實錄 宣祖 二十九年 4월 壬子(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0) 增補文獻備考 中 禮考 二十六 章服一 (동국문화사, 1970, 影印本), p.18.

(11) 英祖實錄 英祖 十七年 四月 壬寅

(12) 증보문헌비고 中, p.20.

(13) 英祖實錄 英祖 卷七一 二十六年 庚午 三月 丙寅 13張 A

(14) 正祖實錄 卷三十五 16년 壬子 8월 己巳

(15) 純祖實錄 十九年 三月 己卯 8. A장

毛緞直領”(16)의 기록과 고종 21년 “私服變制節目別單에 廣袖衣, 즉 직령 도포 弊衣·中衣를 금한다”(17)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폐지령은 궁중에서도 지키지 않았으니 “純宗 冠禮 당시의 三加儀式에 대한 宮中撥記에 世子宮 冠禮 正月 二十日 處所 重熙堂 空頂幘·雅靑甲紗·直領·初加 익선관·용포·再加 원유관·강사포·三加 平天冠 冕服”(18)이라고 있다

② 中人의 직령 착용

세종 31년 의정부에서 예조의 문文에 의거하여 금제조건을 아뢰기를 “각 殿과 각 邑의 別監, 小親侍 典樂署의 樂工은 상시 속당 脰注音 帖裏를 입고, 差備時에는 團領을 입으며, 外方 鄉吏는 직령을 입으며...이 禁法은 명년부터 시행한다.”(19) 이때 제정된 별감과 향리복은 직령으로 經國大典(성종 때 완성)에서도 같다. 즉 별감 常服은 朱黃草笠과 직령이고, 대궐내 각 差備는 靑帽·직령·條兒이며, 향리의 常服은 黑竹方笠·직령·조아·皮鞋이다. 續大典(영조 22년 완성)에서는 별감 常服은 朱黃草笠·紅직령이며, 朝儀에는 綠色이고 향리 常服은 黑笠·직령이며, 謁內 각 차비는 청모·직령이며, 守僕은 皂巾·홍직령이었는데 이 제도가 大典會通(고종 2년) 때도 같았다. 초기부터 말기까지 별감 향리 차비의 常服으로 직령이 계속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國恤服으로도 직령을 입었다. 世宗實錄 五禮儀에 별감 小親時 각 差備들은 아주 짧은 極麤·生布·直領衣·頭巾·麻帶·白繩鞋를 착용하도록 정했는데, 이 제도가 小親時만 제외된 별감과 차비의 國恤服으로 國朝五禮儀에도 이어지며 계속 國末까지 시행되었다.

③ 庶人(庶民)의 직령 착용

고려 말기에 직령을 입도록 규정된 사람들이 조선왕조 초기에는 團領을 입었기에 세종은 服色詳定條件을 集賢殿으로 하여금 의론하게 했다.

“...(중략) 제 3 조 庶人·各司諸員·隊長·隊副·外方의 日守兩班 및 工·商·賤隸는 團領을 없애고 첩리와 脰皺衣와 直領衣를 입으라.”(20) 이것은 고려 辛禡 13년 6월의 제도가 다시 채용된 것이며 3년 후에는 구체적이고도 넓게 직령 착용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별감 소친시 외방 향리와 함께 서울 안의 上林園·別監·隊仗·隊副·武士·庶人, 지방의 日守兩班 工·商·賤隸는 直領과 脰注音과 첩리”(21)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世祖 때에도 계속 입혀졌은즉 “세조는 좌의정 韓確의 家僮을 불러 雅靑·綿布·單圓領·灰色綿布·袂塔胡·柳靑·紬·袂·帖裏·白紬·袂裏肚·土紅·綿布·直領·黑麻布·帖裏 各一領, 白苧布 帖裏 二領, 黑斜皮油靴를 路上에 나아가 주게 하였다.”(22) 이후 서민의 직령 착용 기록은 찾지 못했고, 양반의 직령 착용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서민의 옷에서 양반의 옷으로 승격하게 된 것 같다.

2) 用途面으로 본 직령

- ① 喪服: 초기에는 文武百官 및 內官의 喪服이 었으나 세종 이후에는 착용하지 않았다. 별감 향리 차비의 喪服으로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착용됐다.
- ② 常服: 별감 향리 차비의 常服으로 초기부터 말기까지 착용됐다.
- ③ 庶人의 옷: 庶人 外方의 日守兩班 工·商 賤隸 및 隊長·隊副·武士의 平服으로 世祖 祖까지 착용됐다.
- ④ 兩班의 옷: 士大夫 儒士의 出入上服 및 燕民 服으로 세조 이후부터 말기까지 착용됐다.
- ⑤ 書筵服: 順懷世子가 東宮 때에 서연복으로 착용했다.
- ⑥ 冠禮服: 純宗이 世子 때 冠禮服으로 착용했다.
- ⑦ 櫛宮衣衾: 正祖의 재궁의대로 毛緞 직령 1착을 넣었다.

(16) 正祖實錄 卷54, 24年 庚申 六月 癸未 66張 B,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1968, 영인본) 96권 순조 원년, p. 83.

(17) 高宗實錄 卷21, 고종 21년 6월 49面

(18)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p. 380.

(19) 세종장헌대왕실록(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판), 19권, pp. 141. 世宗實錄 卷123, 世宗 31년 正月 丙午 6B ~7A장

(20) 세종장헌대왕실록 17권, 국역판, p. 449, 세종실록 세종 28년 5월 壬辰

(21) 주 19 참조

(22) 世祖實錄 세조 2년 7월 卷四 29張 B, 세조실록 2권 국역판, p. 71.

Ⅲ. 직령의 형태

직령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실물 金緯(1558~1618 광해 10년)의 遺物 2着과 國末 궁중에서 사용했던 遺物 34着이 있으며, 肅宗 45년(1719)의 耆社契帖, 蕙園 풍속도 등이 있다.

A. 조선왕조 초기의 형태

고려 辛禡 13년(1387)~조선왕조 초기 성종까지(1470~1494)의 직령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현재로는 찾지 못했으나 추측할 수 있는 참고자료는 있다. 첫째로 중기와 말기의 유물 형태는 團領과 옷깃만 다르고 다 같으므로(특히 무의 제도는 똑같다) 초기의 단령의 형태를 참조할 수 있고, 둘째로 고려 관복 개정시 明制에 의했다는 高麗史의 기록에 의거하여 중국의 직령을 참조하여 추정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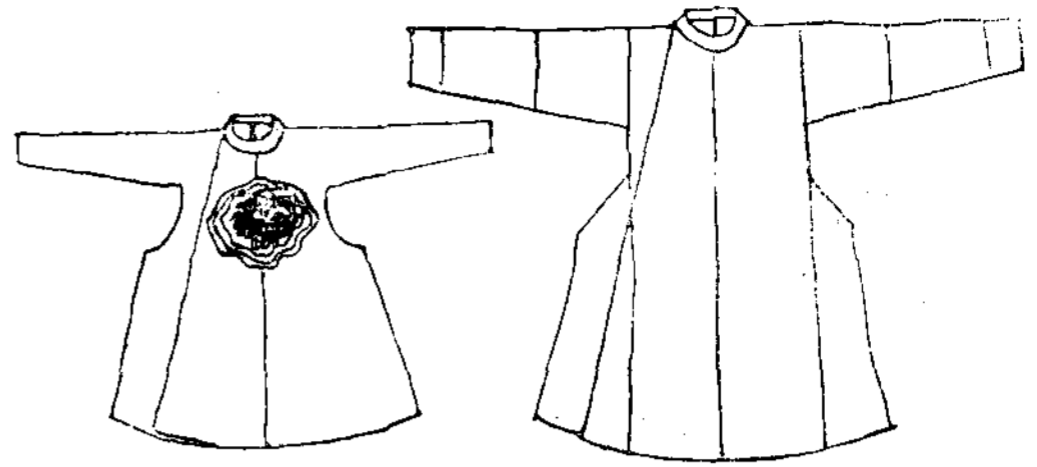
초기 단령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으나 몇 가지만 제시하면 樂學軌範(성종)에 무를 붙여서 마름질한 단령(도 1)과 무를 따로 마름질하여 붙인 단령(도 2) 2가지가 있으며, 全身像 李穡의 초상화와 李太祖(도 3) 御眞이 있다. 또한 明의 天子 常服圖(도 4)가 있다.

직령은 중국의 唐~明까지 계속 착용했음을 회화자료로 알 수 있다. [도 5]는 韓滉(723~789) 作文苑圖에서 한 사람이 미색 직령에 같은 색 포백대를 띠고 있다. 다른 두 사람은 넓은 橫欄이 있는 자색과 미색 단령을 입고 있는데 트임이 없다. 한 사람은 횡란이 없는 흑단령인데 트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도 6]은 顧闳中 作 韓熙載夜宴圖인데 북치는 사람이 土黃色 직령에 白色帶(포백대인 것 같다)를 띠고 있다. 초대된 사람들은 넓은 橫欄이 있는 흑단령과 띠 없는 흑색, 홍색 단령을 입고 있는데 트임이 없다.

[도 7]은 宋 末期 Street Scene in Peace Time의 몇 장면 중 8인이 직령을 입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종류의 袍를 입고 있는데, 초록색 단령을 입은 모습도 보이며, 단령과 직령의 무와 옆트임의 모습이 같게 표현되어 있다. 직령의 색은 초록 걸감에 홍색안을 댄 것, 청색 걸감에 청색 안을 댄 것, 보라색 걸감에 청색 안을 댄 것, 고동색 걸감에 청색 안을 댄 것이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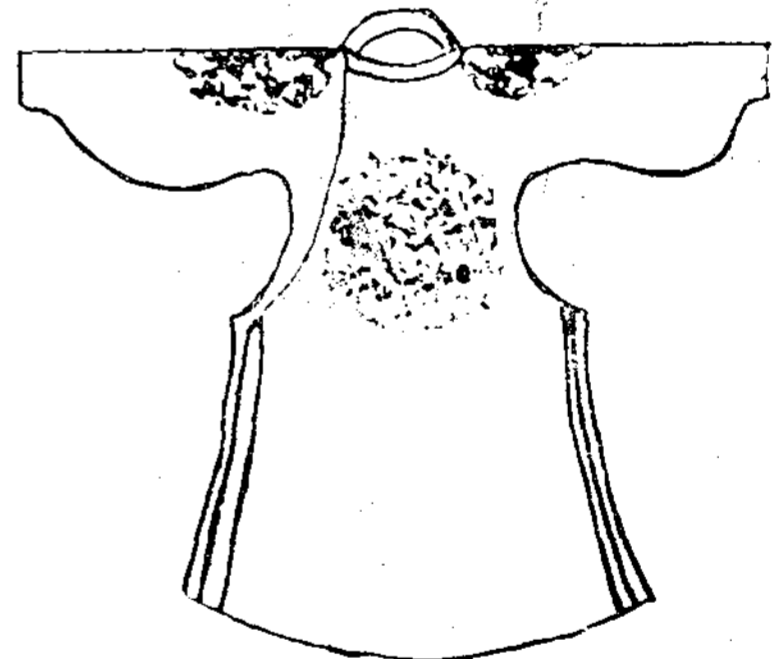
으며, 백·록·자색 형질 끈을 매고 있다.



[圖 1] 단령(악학계범) [圖 2] 흑단령(악학계범)



[圖 3] 李太祖 御眞(명인초상대감)



[圖 4] 天子 常服圖(大明會典)

明代의 Yang Jung's Apricot Garden on April (1437)에서 소색 직령을 입은 하인과 연두색과 소색 단령을 입은 하인들이 사중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형질 끈을 매고 있으며 무의 제도는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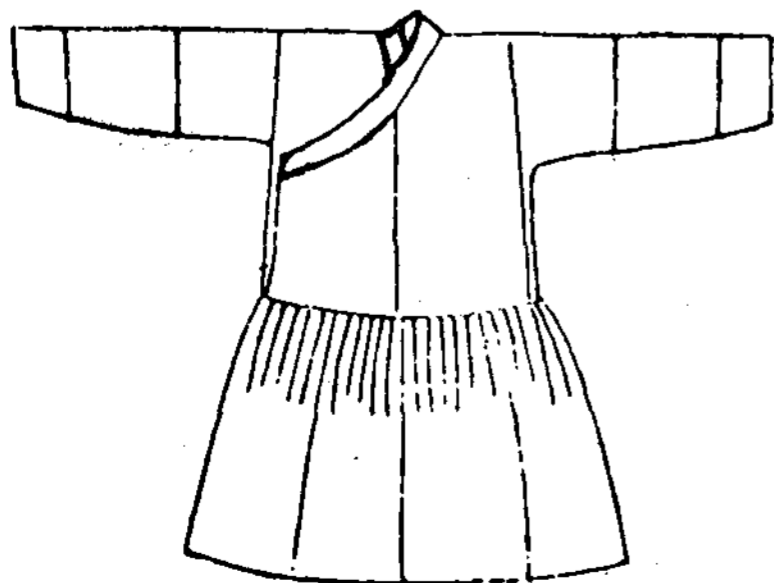
이상 살펴 본 결과 조선 초기의 직령의 옷깃은 [도 8]과 같았을 것이고, 소매 넓이는 좁고 右衽이며, 무의 형태는 [도 1]과 [도 2]의 것이 공존했을 것으로 본다. 옷감의 넓이에 따라 [도 1]과 같이 무를 붙여 마름질하거나 [도 2]와 같이 따로 마름질해서 붙이기도 했을 것이다. 옆트임은 옆으로 뻗은 나간 부분부터 끝까지 트였을 것이다.



〔圖 5〕 韓滉의 文苑圖 [圖 6] 顧闳中 韓熙載夜宴圖
(China, History in Art) (中國美術 II, 講談社)



〔圖 7〕 Chu Yü Street Scene
(China, A History in Art)



〔圖 8〕 단첩리(악학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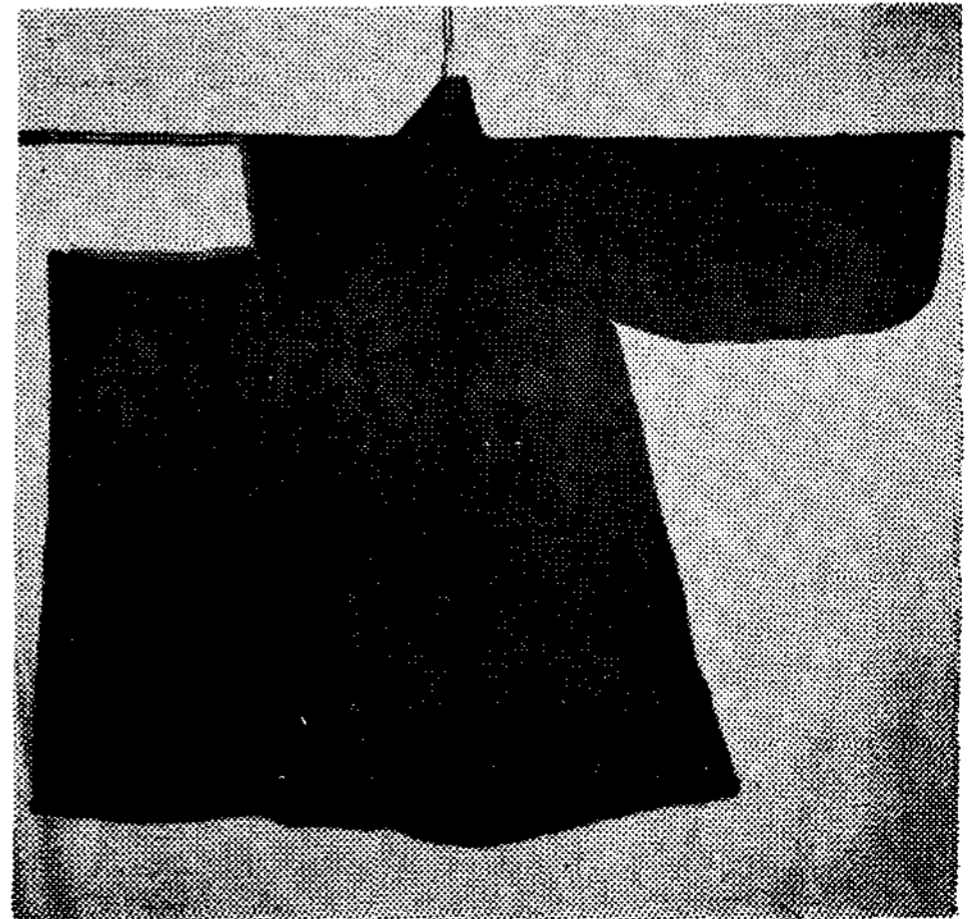
B. 조선왕조 중기의 형태

연산군(1494~1506)부터 현종(1459~1674)까지를 중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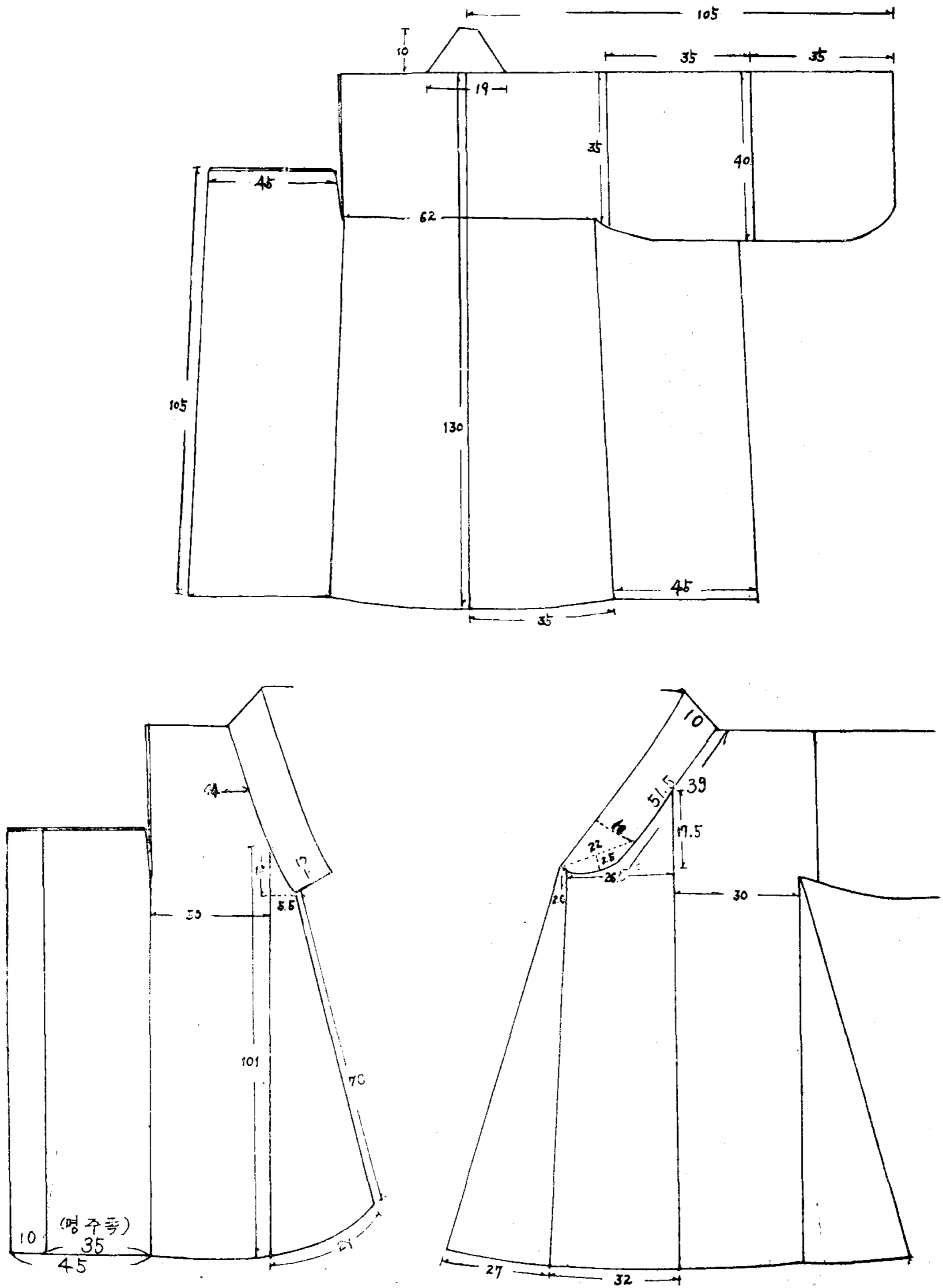
충북대학박물관에는 金緯(명종 1558~광해군 1618)의 遺衣가 직령 외 7종 19점이 소장되어 있다. 김위는 임진왜란 때 金時敏 장군의 長姪로 주원군 訖味面이 충주댐 수몰 지역이므로 槐山郡 槐山面 陵村里로 이장하던 차 미이라화된 시신과 함께 壽衣가 출토된 것이다. 직령은 2着이 출토되었는데, 1着은 겹직령이고 다른 하나는 團領의 裏衣였다.

겹직령(도 9, 10)은 겉은 갈색 명주이고 안은 素色 명주로 右側 소매가 떨어져 나갔다. ① 겉깃은 칼깃이고 안깃은 현대 두루마기의 안깃과 같이 달렸고 겉깃 길이가 안깃 길이보다 짧다. ② 화장(105cm)은 매우 길고 소매 넓이(40cm)는 넓어졌다. ③ 무는 가로 35cm 세로 105cm의 직각 사각형을 따로 마름질하여 길에 붙였는데 펼쳐져 있다. ④ 동정은 없으며 웃고름은 떨어져 나갔다. ⑤ 바느질법은 겹으로 박아서 고대 쪽으로 뒤집어서 옷깃을 달았고, 겉섶과 안섶의 솔기를 모두 길쪽으로 꺾은 점이 현대 겉섶 솔기를 섶쪽으로 꺾는 법과 다른 점이며 다른 솔기 처리는 현대 바느질법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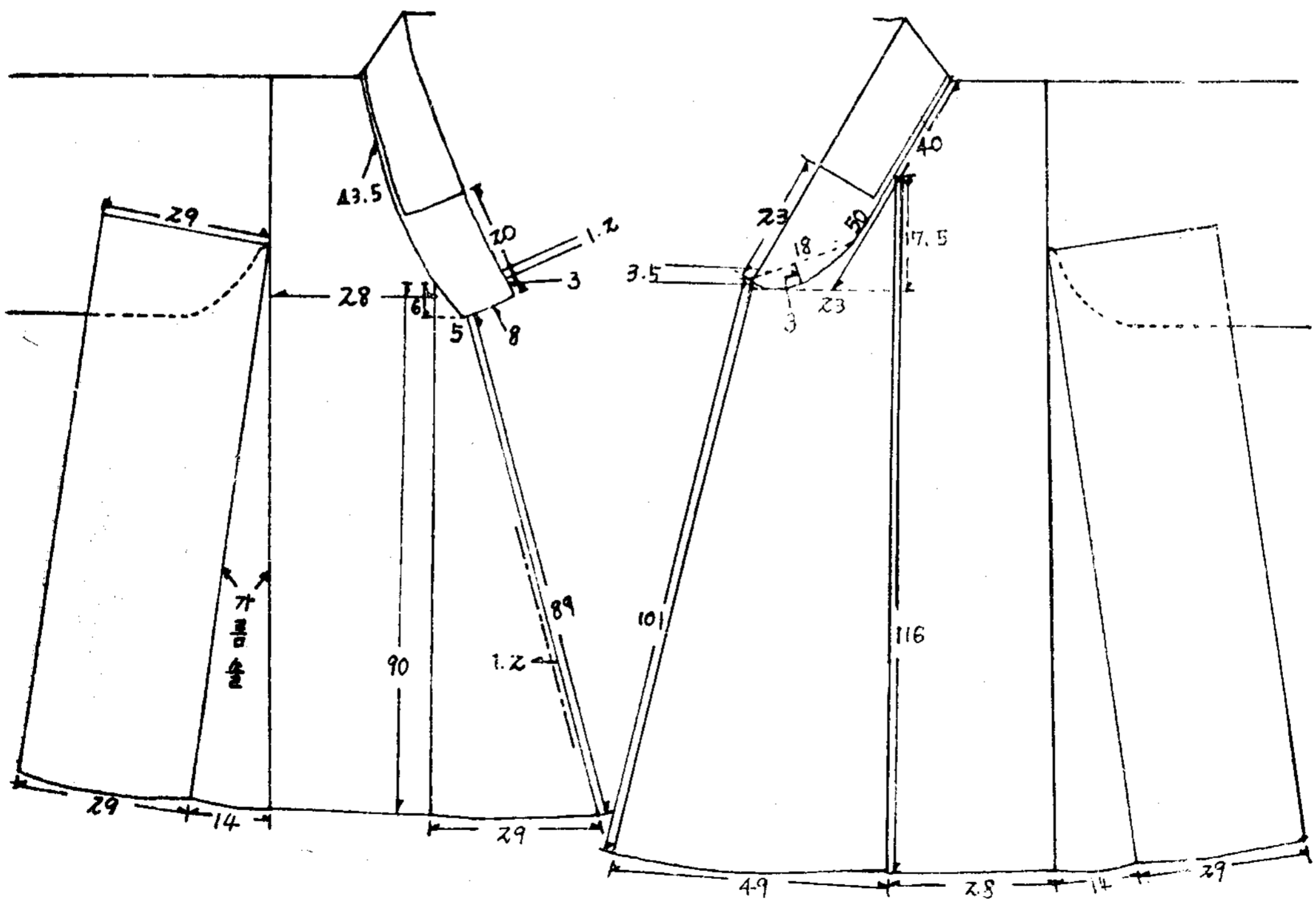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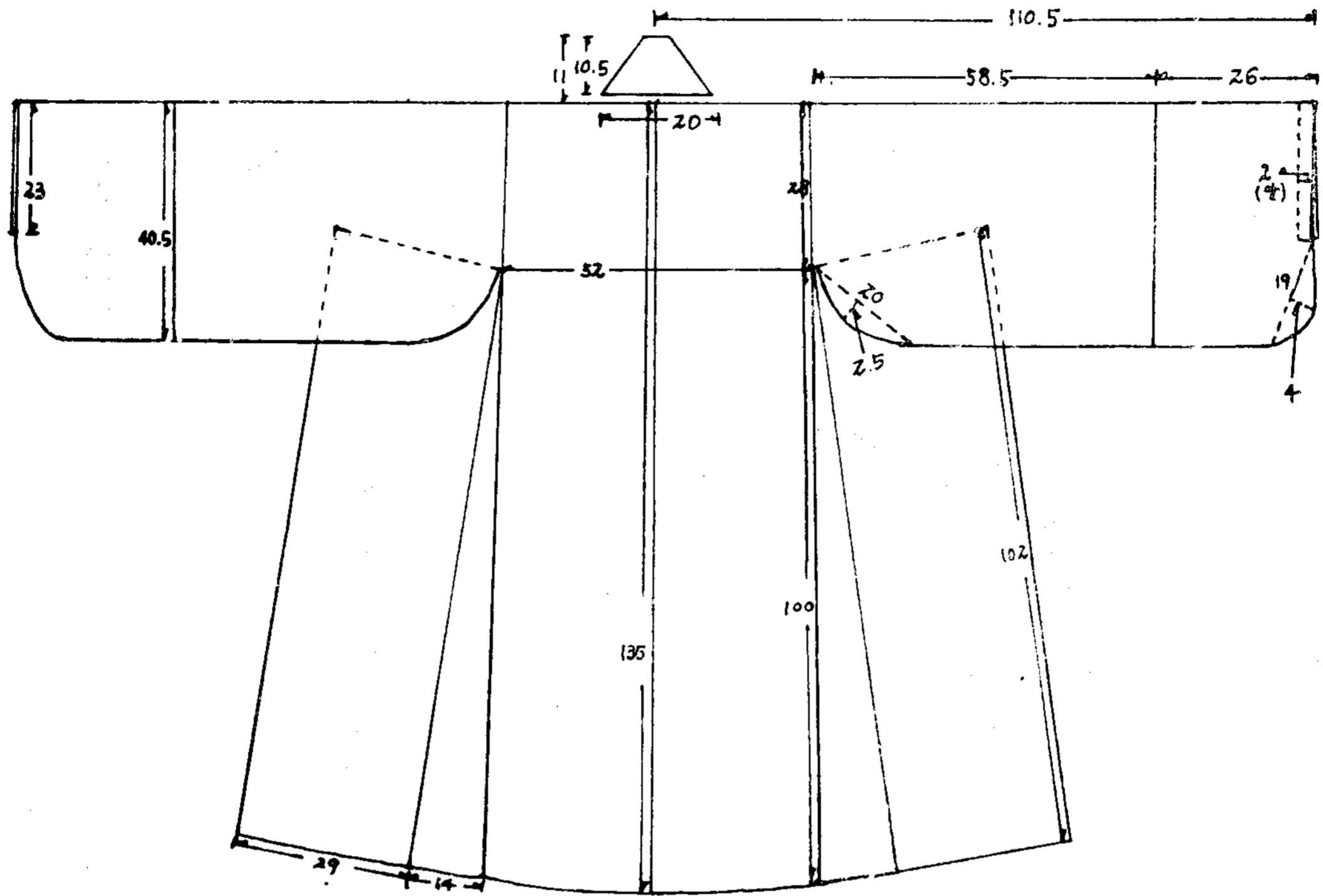
갈색 雲紋緞 홑직령(도 11, 12)은 황갈색 명주 홑단령의 裏衣이다. ① 겉깃은 칼깃이며 안깃은 현대 두루마기의 안깃과 같고 겉깃 길이가 안깃 길이보다 짧다. ② 화장(110.5cm)은 매우 긴데 겉옷인 단령의 화장(117cm) 보다는 6.5cm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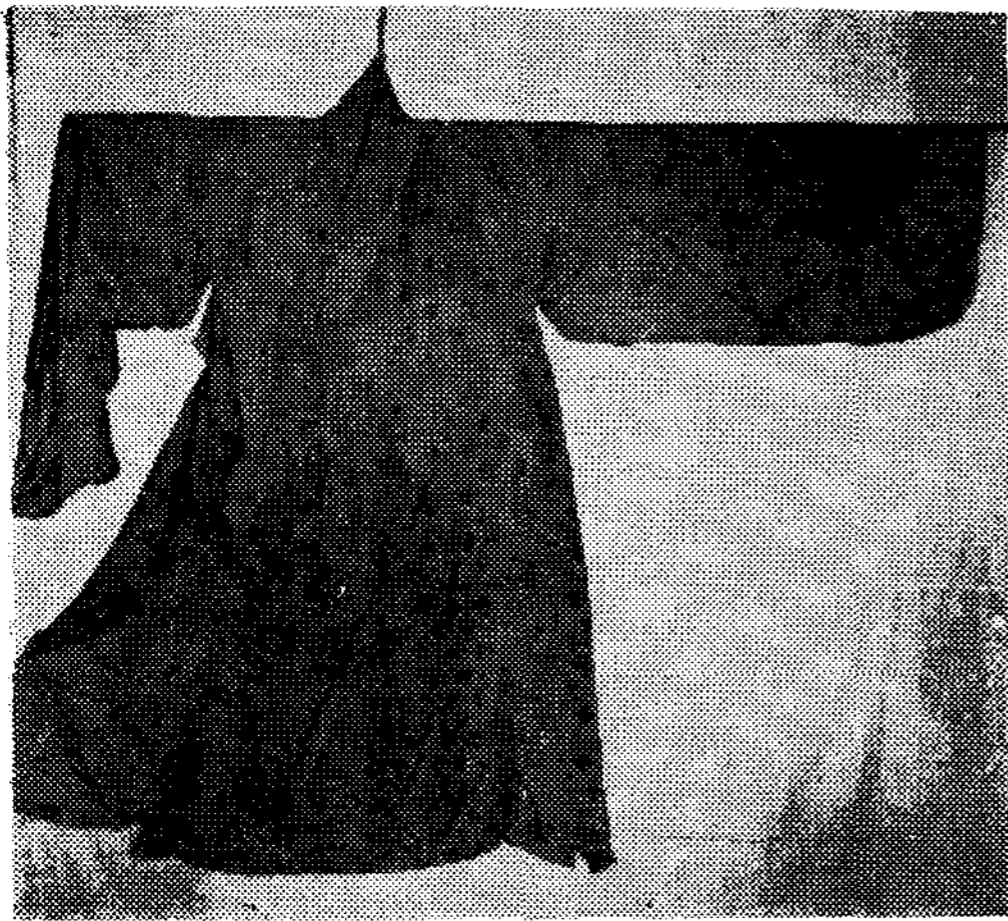
〔圖 9〕 겹직령(충북대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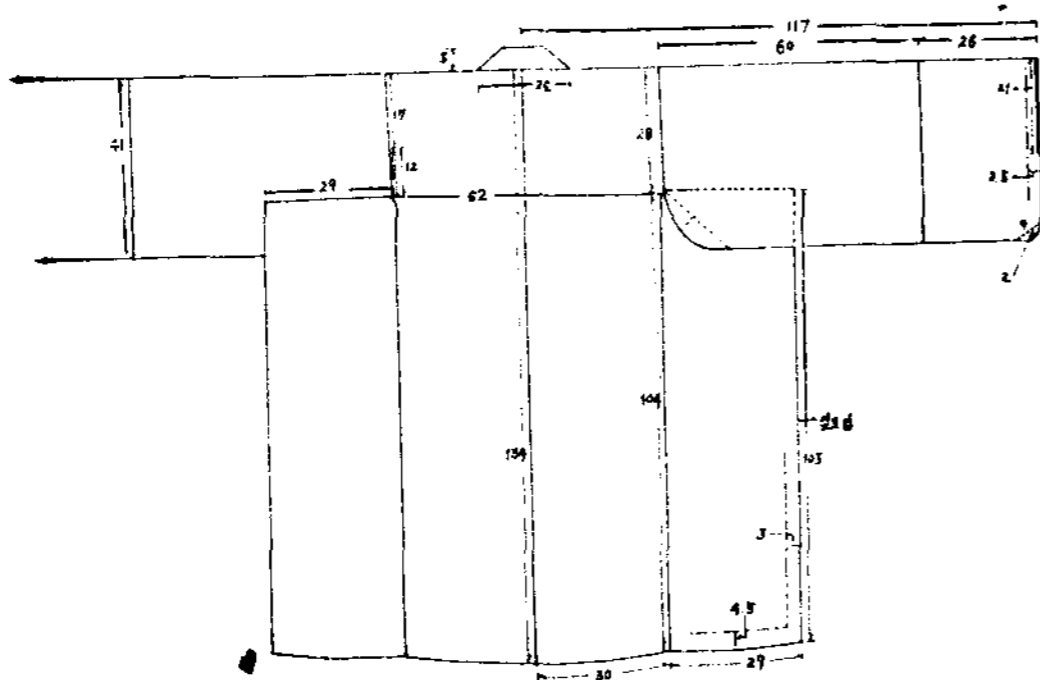
[圖 10] 갈색 명주 겹직형(충북대박물관 소장)



[圖 11] 직령(단령의 裏衣, 충북대박물관 소장)



[圖 12] 괴산군 출토 홀직령
(단령의 裏衣, 충북대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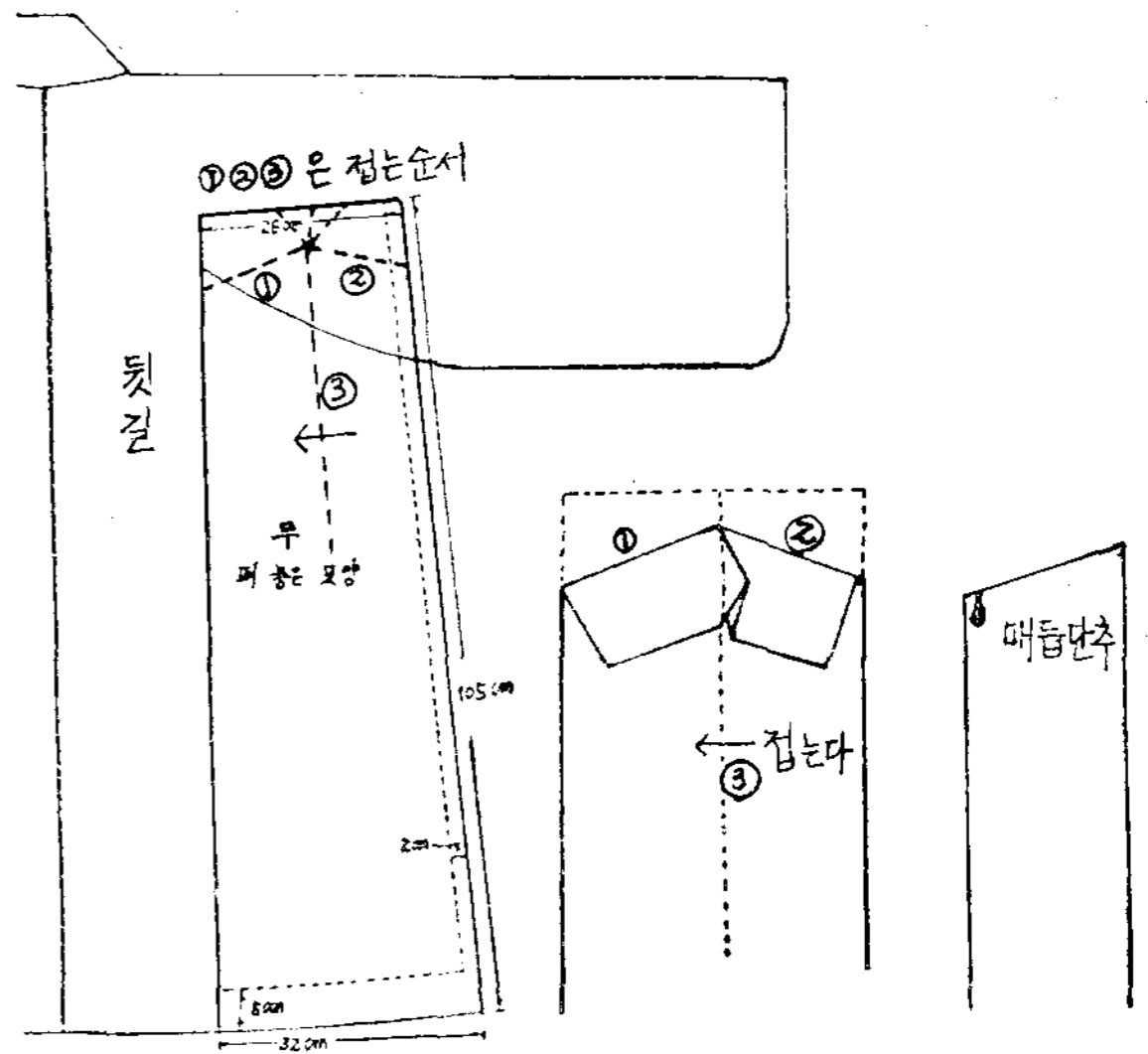
[圖 13] 황갈색 명주 단령



[圖 14] 柳頓像
(명인초상대감)

의 직각 사각형을 따로 마름질하여 붙였는데 길에 직접 붙인 겹직령과 다른 점은 삼각형의 옷감을 길에 붙인 후에 거기에 직사각형을 붙인 점이다.

③ 소매넓이(40.5cm)는 넓은 편이다. ④ 넓은 동정(10.5cm)이 달려 있고, 좁은 옷고름이 달려 있다. ⑤ 단령의 裏衣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치수가 단령(도 13)보다 1cm 정도 작았는데 화장과 뒷품만 차이가 있었다. ⑥ 등술은 꼬집어 박았고(3mm), 안섶과 걸섶의 솔기는 모두 길쪽으로 꺾었다. ⑦ 무는 가로 29cm 세로 102cm



[圖 15] 후곡리 출토 무명 단령 무접는 법

그러나 겹옷인 단령(도 13)은 길에 직접 직사각형무가 붙여져 있다. 그러면 上과 下의 치수가 같은 무를 붙여 그대로 입었을까? 초기의 형태나 柳頓(1599~1666, 圖 14)의 펼쳐져 있는 단령의 무를 보아서는 윗쪽의 치수가 아래쪽보다는 좁아야 하며 윗쪽이 뾰뚱하게 서 있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손질하는 과정에서 겹직령과 홀직령의 펼쳐진 무를 접은 흔적이 지워졌으며, 무가 홀으로 되어 있어 사진과 같이 뾰뚱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 비슷한 연대로 보아지는 단령의 무의 접은 모양을 참조한다.

[도 15]는 단령무의 上側을 접은 모양인데 충북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노계산에서 연고가 없는 분묘를 이장하던 중(전설은 박장군묘라고 함) 출토되었다(총 15점의 遺衣가 현재 충북대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후곡리에서 출토된 단령의 무는 [도 15]와 같이 上側을 접어 뾰족하게 만들어 뾰뚱하게 뒤로 돌아가게 하여 겨드랑이 쪽만 매듭단추로 고정시켜서 무가 左右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직령의 무도 이와 같이 접었을 것으로 본다.

C. 조선왕조 후기의 형태

숙종(1674~1720)부터 순종(1910)까지로 했다. 耆社契帖(1720년 완성)과 蕙園의 遊廓爭雄과 창덕궁에 소장된 白直領 1着과 紅直領 33着이 있다.

[도 16]은 耆社契帖의 奉盃歸社圖에서 구경하는 백성의 직령 착용 모습으로 무가 뒤로 돌아가 있다. 그런데 耆社私宴圖에서 단령의 무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는데 후곡리 단령의 무(도 15)와 같게 접어 겨드랑이 쪽만 고정시켜 뒤로 젖혀서 左右로 움직일 수 있게 한 것 같다. 서민의 직령의 무도 단령과 같았으리라 생각된다.

[도 17]은 蕙園의 遊廠爭雄에서 별감이 朱黃草笠을 쓰고 홍직령을 입고 남색대를 띠고서 싸움을 말리고 있는데 소매는 넓으며(옷길이 : 소매 넓이 1 : $\frac{2}{5}$) 무는 뒤로 돌아가 접혔으며, 트임의 사이로 남색袍가 보인다. 뒷길 쪽에 있는 트임의 모양은 무의 윗측을 꼬매어 붙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모양이므로 이때는 무를 꼬매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



창덕궁에는 白色 직령 1着(유물번호 3599)과 홍직령 33着이 소장되어 있는데 홍직령은 3가 [圖 16] 직령 착용 모습(기사제첩)

白直領은 흰색 생모시로 만든 홑옷으로 형태는 [도 18, 19]와 같다. ① 옷깃은 현대 두루마기깃과 같고 흰색 생모시 동정이 달려 있다. ② 소매는 넓은 두리소매로 다른 홍직령보다 넓으며 화장도 길다. ③ 옷고름은 넓고 길며 무는 여분의 무를 뒤로 접어



[圖 17] 蕙園作, 遊廠爭雄 서 무의 윗쪽 15cm 정도를 길에 꿰매어 고정시켰다. ④ 정교한 손바느질이며 걸선의 솔기는 섯쪽으로 꺾었다.

홍직령 중 유물번호 2619-1~23에서 2619-3과 5는 제외한 21着과 2630-1~6(6着)과 2620, 2640(2着) 총 29着은 [도 18, 19]와 같은 형태이다. 홍색 모시로 만든 홑옷으로 재봉틀도 만든 것으로 동정도 홍색 모시이다. 백직령과의 차이점은

화장이 짧고(25~10cm), 소매넓이가 좁은(38~18cm, 표 2 참조) 점이다.

유물번호 2626-1~2(2着, 圖 20)은 걸은 홍색 모시에 안은 청색 항라로 된 겹옷이며 무는 [도 18, 19]와 같으나 소매넓이는 좁고 직배래인 점이 다른 점이다. 특이한 것은 겉과 안을 박아서 뒤집은 겹옷이 아니고 겉과 안을 홑옷 만들듯이 같은 형태 같은 치수로 따로 따로 만들어 끼워서 겹옷을 만들되 수구, 겨드랑이, 걸선, 안선, 무를 가끔씩 실로 징겼다. 끼울 때 청색 안감의 겉쪽을 걸감의 안쪽으로 끼웠기 때문에 솔기가 눈에 띄었다. 안감인 청색항과 직령의 동정은 백색모시였고, 걸감인 홍색 직령의 동정은 홍색 모시였다. 이것으로 착용 순서를 알 수 있었으니 먼저 청색 홑직령을 입고 그 위에 홍색 홑직령을 입었다가 차츰 입기 편하도록 아주 징겨서 입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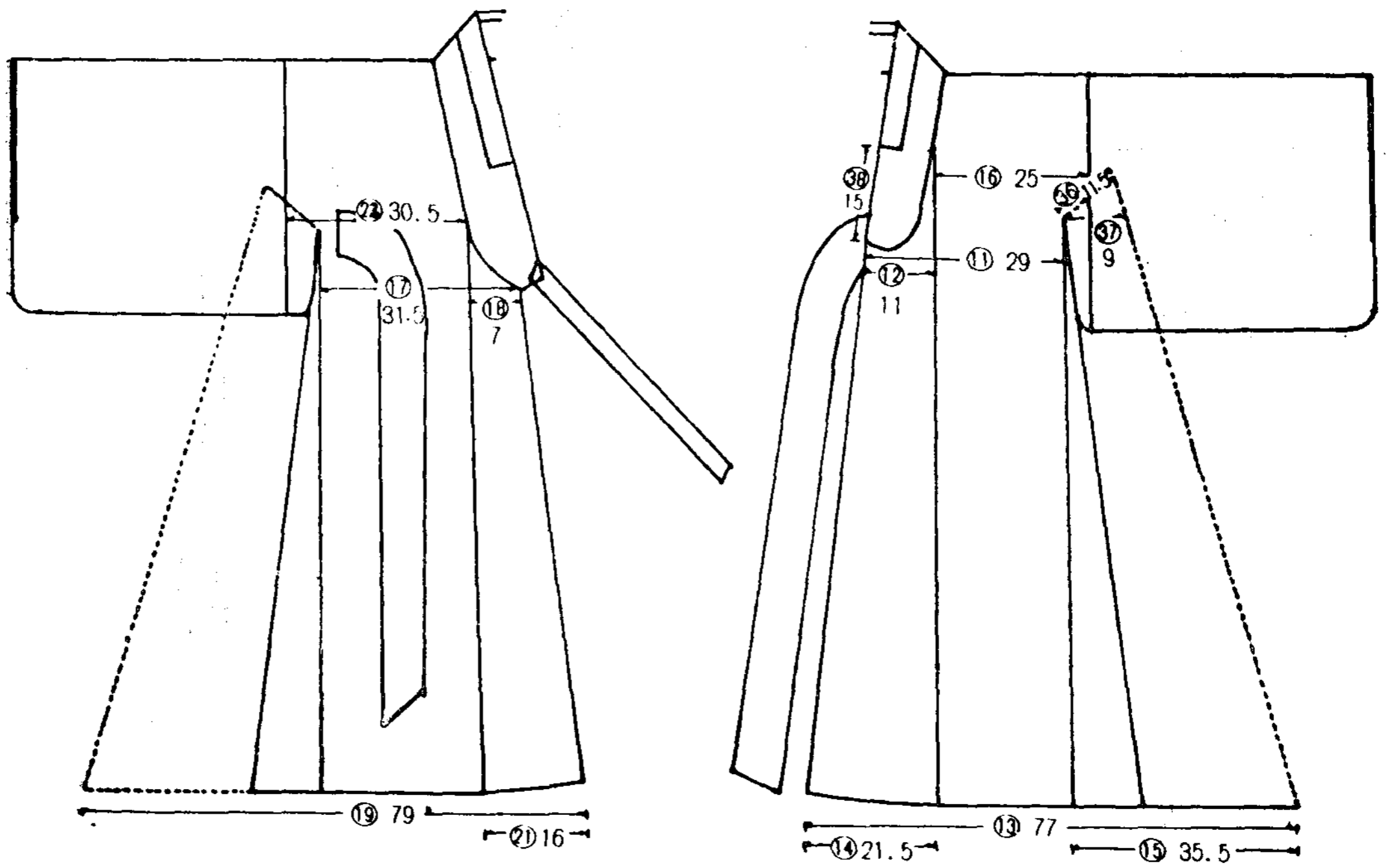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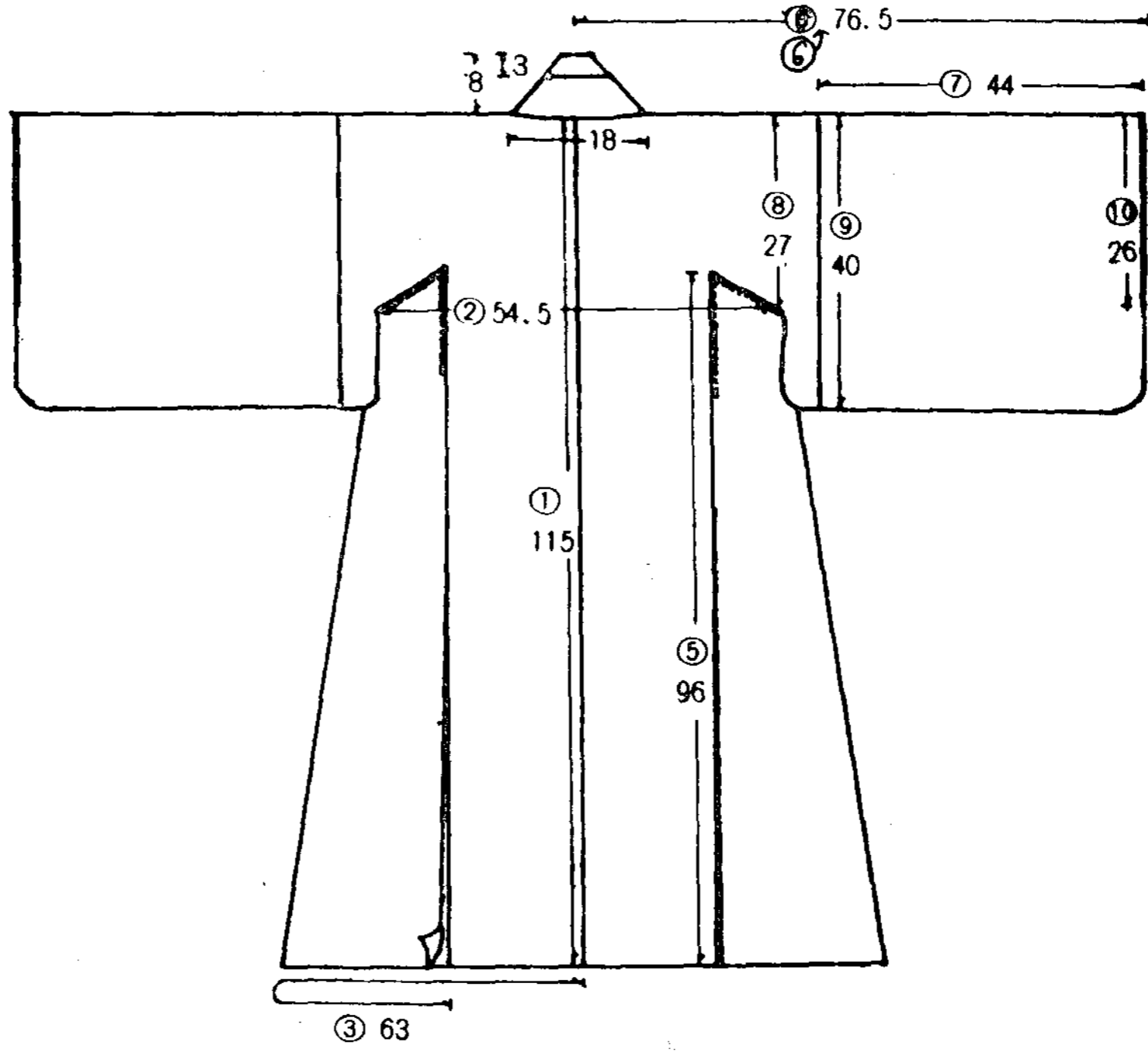
유물번호 2619-3과 5(2着, 圖 21)는 좁은 소매에 트임이 없는 두루막힌 두루마기 형태이다. 옷감은 홍색모시로 된 홑옷으로 동정도 홍색 모시이며 바느질법은 현대 두루마기와 같았다. 홍직령의 이와 같은 변화는 1884년과 1895년 廣袖衣 폐지 이후 “周衣(두루마기)를 官과 民 모두 착용하라”(23)는 간소화운동에 호응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直領이 소매넓은 두루마기(廣袖周衣)형태로도 되었던 기록이 朝鮮常識에 있다. “近世 鄉吏가 착용하는 직령에는 바로 두루마기에 廣袖만 단 것 같이 된 것도 있었다.”(24)



[圖 18] 홍직령(창덕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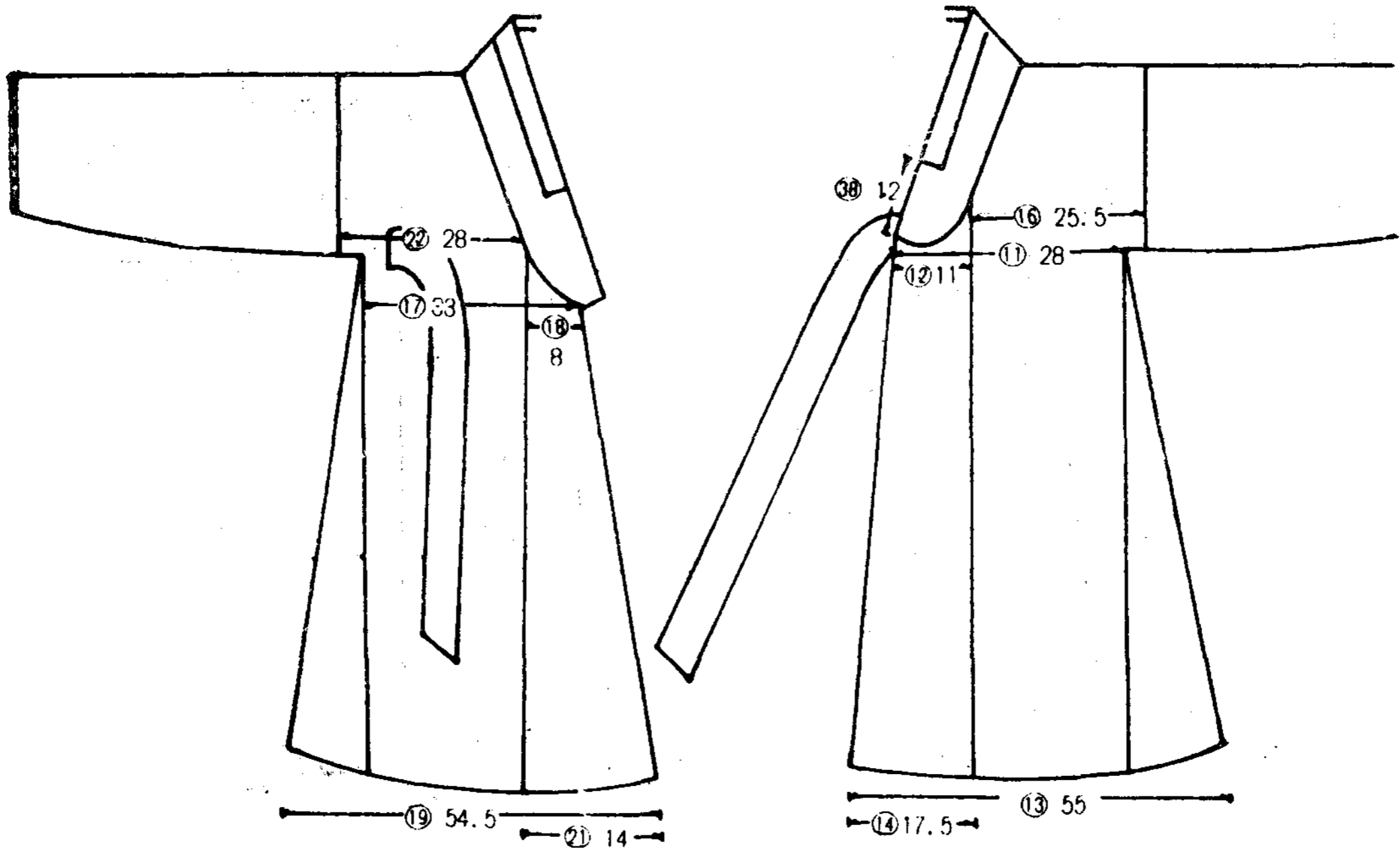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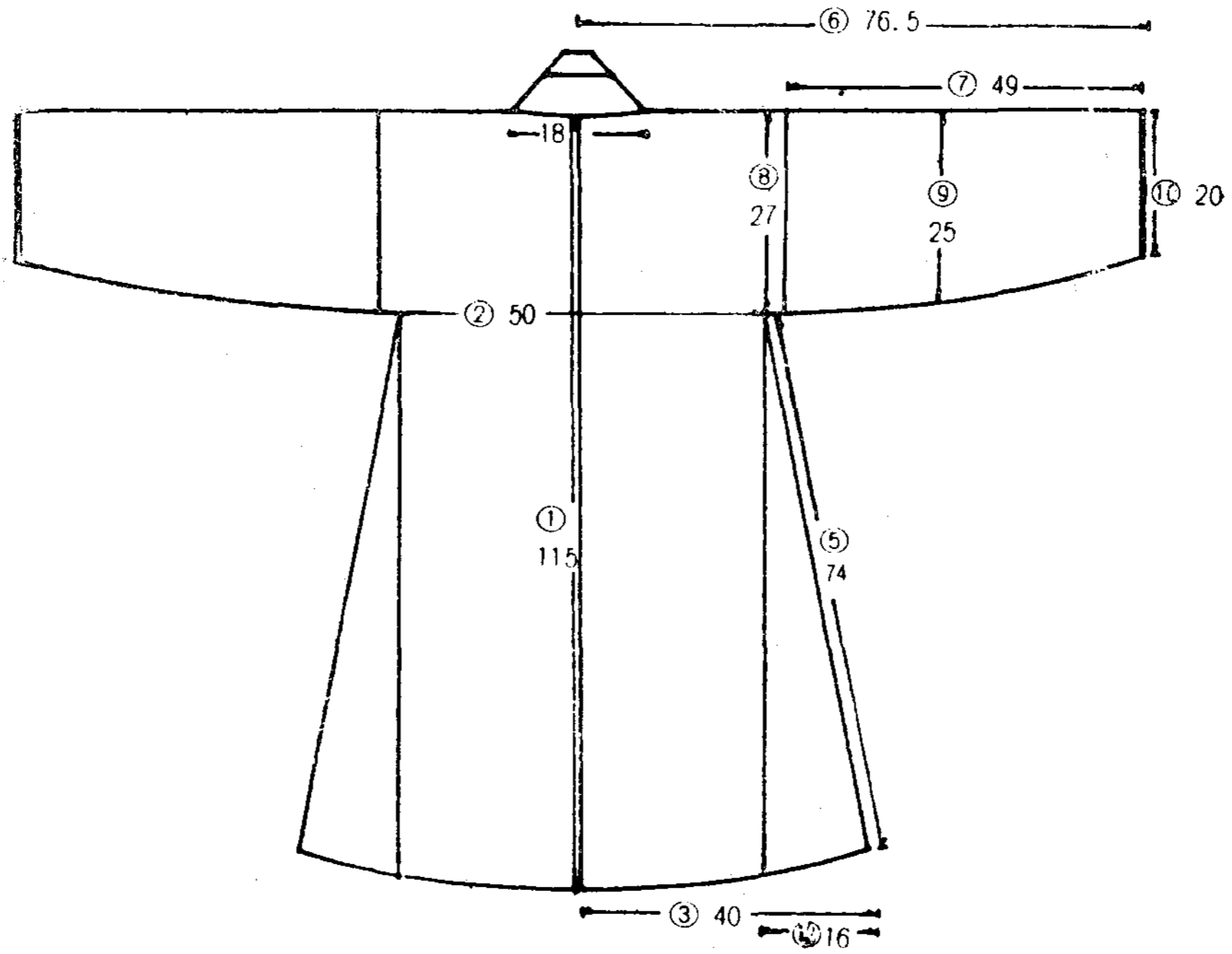
(23) 高宗時代史 卷3, 高宗 31년 12월 70面
 (24)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 直領條.

(26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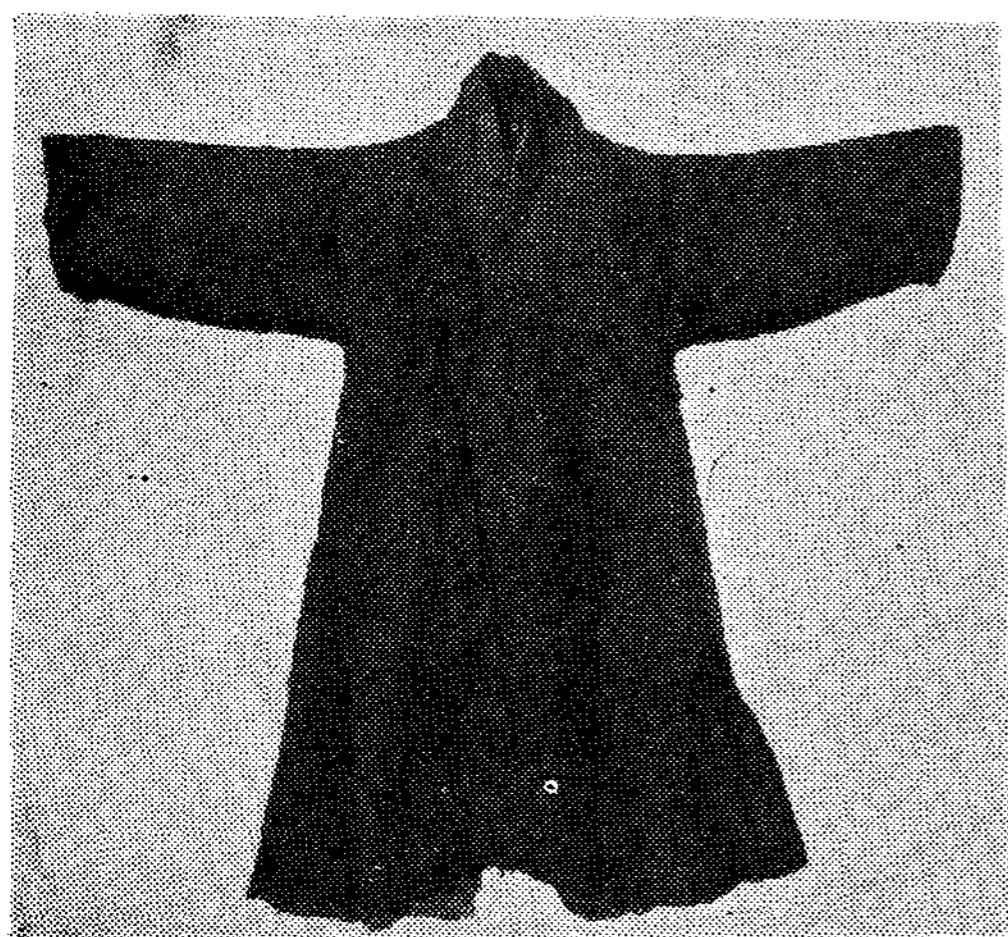


[圖 19] 직령포 I

(2619-3)



I [圖 20] (女袴) II



[圖 21] 結胸 直領(창덕궁 소장)

IV. 결 언

직령은 고려 禡王 13년 6월에 明制에 의해 단행한 冠服改定時 하류계급이 착용 하도록 규정되었다. 형태는 실물에 의하면 옷깃이 곧은 점만 단령과 다르고 다른 곳은 똑같았고, 시대에 따른 형태 변화도 같았다.

이 직령은 조선왕조 때도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 착용됐으며 서민부터 왕까지 두루 착용했다.

서민은 고려말~조선 世祖까지 착용했고 이후 양반의 옷으로 승격되었다. 양반층은 세조 때 연거복으로 입기 시작해서 선조 때는 東宮의 書筵服 士大夫의 연거복 儒士의 私·出入服 文臣服으로 착용됐고, 正祖의 櫛宮衣襟로 넣었으며 高宗 21년과 31년의 私服改革令에 의해 다른 廣袖衣와 더불어 폐지되었으나 純宗은 世子 때 冠禮服으로 입었다.

別監 鄉吏 小親侍의 常服으로 직령이 초기부터 말기까지 착용됐다.

喪服으로는 太宗과 世宗 때까지 文·武百官 및 內官의 喪服으로 직령이 입혀졌고 별감 향리 차비의 喪服으로 초기부터 말기까지 입혀졌다.

옷감은 麻布·갑사·모시·명주·緞이 사용되었고 색은 白·紅·아청이 사용되었다.

형태는 초기에는 窄袖에 옷깃은 현대의 안깃같은 목판깃이고 무는 좁고 중기에는 소매넓이가 넓어졌고, 옷깃은 칼깃이고 무는 넓어졌고, 무의 윗쪽을 뽀족하게 접어서 뒤로 젖혀 입었다. 후기에는 소매넓이는 넓고 깃궁둥이가 완만한 현대의 두루마기 깃이며, 무는 완전히 뒤로 젖혀 길에 무의 윗쪽을 꼬매어 고정시켰다. 고종 31년 이후 두루마기 형태로 만들어 입기도 했다. 이러한 형태 변화는 단령의 형태 변화와 같았다.

<앞으로 연구할 문제점>

필자는 明制에 따라 관복개정을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에 의해 논문을 전개했으나 직령 사여에 대한 기록은 찾지 못했다.

고려는 많은 노력을 들여, 단령을 사여 받았다. 이때 단령의 裏衣로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세한 단령 사여 품목의 기록이 없으므로 의문점으로 남기며 더 많은 자료를 기다리면서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해 본다.

① 직령은 고려 이전부터 입혀진 우리 민족이 만든 옷이며 중국에 전했다. 직령은 통일신라 때 많이 입었던 단령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었다. 즉 우리 고유 포에 옆트임만 주면 직령이 된다. 우리는 많은 전쟁으로 기록이나 회화가 없지만 중국에는 자료가 남아 있다.

② 직령은 중국의 옷이지만 고려 이전부터 입혀졌었으며, 辛禡 13년 관복개정 때 하층 계급의 옷으로 채용되었다.

[표 1]

문헌에 보이는 直領

시 대	출 처	착 용 자	服 飾
우왕 13년 6월	고려사	祿官仕時 同三館 各領尉正 飯房水房 燈燭上所 工商同百姓雖有職者	坎頭 高頂笠 直領纏帶 白甲 坎頭 高頂笠 直領纏帶 氈帽 高頂笠 直領纏帶 絲帶
태종 8년 5월	태종실록	內官喪服 } 李太祖喪 文武百官喪服	白頭巾 斬衰直領 生麻帶 白皮鞋 布裏笠 白笠 布裏紗帽 斬衰直領 生麻帶 白靴 布裏笠 白笠

시 대	출 처	착 용 자	服 飾
세종 28년 3월	세종실록	王妃喪制 世子斬衰 卒哭前進見時 牽馬陪正闕達陪寶馬倍衣帶陪諸員等	白直領衣 黑草笠 黑條兒 白靴 白布直領衣 白雲鞋 白行纏 白笠 熟麻帶
세종 28년 5월	세종실록	庶人 各司諸員 隊長 隊副 外方の 日守兩班 工商賤隸	帖裏 腋皺衣 直領衣
①세종 31년 1월 ②五禮儀	세종실록 세종실록	各殿 各官의 別監 小親侍 典樂署 의 樂工 外方 鄉吏 서울안 上林園別監 隊仗 隊副 武士 庶人과 外方日守兩班 工商賤隸	상서 直領 映注音 帖裏 差備 昧團領 直領 直領 映注音 帖裏
세조 2년 6월	세조실록	世祖가 중국사신 金興에게 주라고함	黑細麻布 直領 團領 및 기타
세조 2년 7월	세조실록	世祖가 左議政 韓確의 家僮에게 줌	土紅 綿布 直領 및 기타
성종	국조오례의	國恤服(斬衰, 齊衰服), 별감, 차비	極麤生布直領衣 生布頭巾 麻帶 白繩鞋
성종	경국대전	別監 常服 闕內 各差備 鄉吏 常服	朱黃草笠 直領 青帽 直領 條兒 黑竹方笠 直領 條兒 皮鞋
선조 29년 4월	선조실록	順懷世子 東宮時 書筵服	紅直領
선조	증보문헌비고	李壑雜記 士大夫 燕居服	土紅直領
선조	증보문헌비고	宣祖申禁 士人無職者穿	紅衣直領
광해군	영조실록	儒士 私出入(지봉유설에 의함)	紅直領
효종조	증보문헌비고	금제가 점점 해이해져서 直領 및 白靴를 착용하다.	
경종 원년 6월	경종실록	國恤服, 별감각차비(五禮儀에 의함)	極麤生布直領衣 頭巾 麻帶 白繩鞋
영조 22년	속대전	별감 常服 향리 常服 결내 각 차비 守僕	朱黃草笠 紅直領 朝儀綠色 黑笠 直領 青帽 直領 皂巾 紅直領
영조 26년 3월	영조실록	武臣이 文臣服인 直領을 입는 것을 엄히 다스려야 함.	
영조 27년 卒	한원진 남당초고	士子の 出入上服	直領
영조 39년 卒	이익 성호사설		土紅直領
정조 6년	증보문헌비고	燕居服(士大夫)	直領 심의 도포 칩리 方衣
정조 16년 8월	정조실록	武弁의 服色은 直領이 아니다.	先祖有嚴禁
정조 승하시	정조실록	櫛宮衣櫛	毛緞 直領
순조 19년 3월	순조실록	옛날에는 士大夫의 平居服은 直領, 요사이는 도포를 많이 사용	
고종 2년	대전회통	별감 향리 결내 각 차비 수복 속대전과 같음.	
고종 21년 6월	고종실록	私服 廣袖衣 폐지	直領, 도포, 창의, 中衣
순종	宮中撥記	世子宮 冠禮	空頂 鶻青 甲紗 直領

[표 2]

실 측 표 (직령포 I)

유물번호 치 수	2619-1	2619-2	2619-4	2619-12	2619-19	진열품 2620	2626-1	2626-2	3599	
① 총 길이	115	111	116	119	118	125	116	120	123	
② 뒷 폭	54.5	54	58	58	57	49	51	53	47	
③	63	62	58	65	65	31	63	62.5	62	
⑤	96	93	87	94	98	98.5	95.3	104	98	
⑥ 화 장	76.5	70	78	81.5	80	67	70	70	92	
⑦ 소매 길이	44	37	45	48	46	33.5	36.6	37	59.5	
⑧ 진 동	27	26	30	32	30	33	30	27	33	
⑨ 소매 넓이	40	30	36	39	37.5	33.5	27	27.4	58	
⑩ 수 구	26	28	21	25	25	20.5	24.4	25	23	
⑪	29	30	33	35	36	30	31	30	33.5	
⑫ 겹선풀이上	11	10.5	13	13	11	10	11.2	10.6	13.5	
⑬	77	80	76	86	83	83	79	79.2	89	
⑭ 겹선풀이下	21.5	19	21	21.5	22	19	19.8	20	29	
⑮ 무 넓이	35.5	37	31	37	34	45	32.4	32.8	39	
⑯	25	25.5	25	29.5	28	26	28	24	27	
⑰	31.5	33	35	36	35	34	33.5	35.5	37.5	
⑱ 안선풀이上	7	8.5	7	10	7	8.5	8.4	8.2	12.5	
⑲	79	80	76	79	82	87	81.4	82	88	
⑳ 안선풀이下	16	18	17	17	18	16	18	18	23	
㉑	30.5	32	29.5	33	32	33	32	28.5	33	
㉒ 겹깃 길이	27	28	31	32	32.5	25	32.4	29.4	32	
㉓ 안깃 길이	37	35	40	41.5	39	34	36.2	27.2	44.5	
㉔ 깃 넓이	8	7.5	9	10	8.5	7	8.8	7.4	11.5	
㉕ 고대 넓이	18	19	18	17	22	18	21.4		18	
㉖ 동정 길이	65	없음	67	69	71	60.5	67.5	68	76.5	
㉗ 동정 넓이	3	"	4	4	3.5	3.5	3.8	4.2	5.5	
㉘ 고름 길이	92, 76	80, 62	74, 62	90, 74	75, 80	100	82.4, 70.4	83(70.4)	81, 82	
㉙ 고름 넓이	7	6	6	7.5	7	7	7.2	7.4	7	
㉚ 안고름 길이	41	없음	54	43, 30	45, 50	45, 5	49	24	73	
㉛ 안고름 넓이	2	"	4	2.5	3.5	3.5	3.6	2	7.5	
㉜ 옆 터 집	61	"	66	51	73	없음	67.5	78.6	82	
㉝ 등바대 가로 (세로)	42(4)	66(2.5)	35(8)	67(8)	34(5.5)	없음	70(5)	44(3.4)	없음	
㉞ 겹대 가로 (세로)	11.5(15.5)	14(20)	13(16)	16.5(17.5)	12(16)	없음	7.3(11)	6.5(10)	23(22.5)	
㉟ 무	11.5	11	10	15	11	10	12	12.5	14	
㊱	9	9	7.5	12.5	7.5	7	9	8.5	11.5	
㊲ 동정 위치	15	없음	13	14	10.5	10.5	12.5	"	14	
특 징	· 홍색 모시 · 홑 · 같은 감 · 동정 (끝 이 뽕죽) · 관복무 · 재봉틀	· 홍색 모시 · 홑 · 동정 · 없음 · 관복무 · 재봉틀	· 홍색 모시 · 홑 · 같은 감 · 동정 (끝 이 뽕죽) · 관복무 · 재봉틀	· 홍색 모시 · 홑 · 같은 감 · 동정 (끝 이 뽕죽) · 관복무 · 재봉틀	· 홍색 모시 · 홑 · 같은 감 · 동정 (끝 이 뽕죽) · 관복무 · 재봉틀	· 홍색 모시 · 홑 · 같은 감 · 동정 (끝 이 뽕죽) · 관복무 · 재봉틀	· 홍색 모시 · 홑 · 같은 감 · 동정 (끝 이 뽕죽) · 관복무 · 재봉틀	· 홍색 모시 · 겹 · 같은 감 · 동정 : 청 · 안감 : 청 · 색향라 (백색 모 시 동정) · 휘손 : 안 · 감 길에 · 4곳 · 단넓이 : · 5cm	· 左同	· 흰색 모시 · 홑 · 같은 감 · 동정 (끝 이 뽕죽 · 없음) · 관복무 · 손바느질

[표 2]

실 측 표 (직령포 1)

유물번호 치 수	2619-6	2619-7	2619-8	2619-9	2619-10	2619-11	2619-13	2619-14	2619-15	2619-16	2619-17
①총 길 이	116.5	120	109	116	119	124	113.5	110	117.5	111	115
②뒷 품	60	50	54	46	54.5	56	52.5	53	53	53	57
③화 장	80	70	75	68	72	80	75	80	71	73	78
④진 동	28.5	24	30	24	31.5	27.5	26.5	29	33	29	27
⑤소 매 넓 이	33.5	24	30	33.5	34	38.5	26.5	34.5	33	33	40
⑥수 구	8	24	20.8	33.5	22.5	18	23.5	21	28.5	29	26
⑦고 대	21	19	21	18	18	17	18	16	18	18	19.5
⑧깃 넓 이	9.8	7	8.4	7.5	8	10	8	10	8	8	9.5
⑨결 깃 길 이	31	26	35	29	33	36	29.5	29	32.5	30	30.5
⑩안 깃 길 이	37.5	32		33	30		33	36	40	37	38
⑪결섵넓이상	13.5	10	13.5	11.5	9	12	10.5	12	11	10	12.5
⑫결섵넓이하	22.5	23	23	21.5	20	24	20	23	19	19	25.4
⑬안섵넓이상	8	10	7.5	8	8.5	9	6.5	9.5	8	6.5	17.5
⑭안섵넓이하	19	24	18	20	18	21	18	21	17	14	20
⑮고름길이左	85.5		76	92	65	78.5	83	72.5	91.5	72	92
⑯고름길이右	71	71	55	63	73	83	70		70.5	62	83
⑰안 고 름											
⑱고 름 넓 이	6.4	5	4.8	6.5		6.8	6.5	6.5	7	5.5	7.5(3)
⑲무 넓 이											

유물번호 치 수	2619-18	2619-21	2619-22	2619-23	2630-1	2630-2	2630-3	2930-4	2630-5	2630-6	2640
①총 길 이	119.7	116.5	112.5	124.5	121.5	119.2	117.5	112	116.6	114.4	111.4
②뒷 품	53	54	55	48	61.4	54.8	51	55	51.4	48	49.5
③화 장	74	73	69	80	83	74	79.5	72.3	74	73	80.5
④진 동	28	29	57	31	30.4	27.5	31	28.4	26	28	26
⑤소 매 넓 이	27.5	29	57	31	37	34.4	36.5	36.5	40	33	36.2
⑥수 구	26	29	57	20	18.5	22	27.5	23.2	18	21.7	22.2
⑦고 대	19.5	18	19.5	17	21.5	18.4	16	19.7	19	18.3	16.8
⑧깃 넓 이	9.5	9	8	10	8.2	8.6	8	7.6	8.2	7.3	7.4
⑨결 깃 길 이	31	29	31	32	36.2	29.5	31	30	29.6	28.6	31
⑩안 깃 길 이	39	37	35	42	34.5	36.2	36	36.5	39	34	34.4
⑪결섵넓이상	11	11	12	15	10.6	10.4	9.5	10.7	10.6	10.2	11
⑫결섵넓이하	21.7	22	21	38	23	19.4	19	20	25	19	21.8
⑬안섵넓이상	9	7	9.4	8.5	7	8.6	7	8.2	7	8.8	9.6
⑭안섵넓이하	20.3	17.5	19	26	18.5	16.2	15	16.8	21	18	20.2
⑮고름길이左	86	83	83	80	81.5	90.4	98	86	14.8	80.4	
⑯고름길이右	73	78	70	80.4	70.5	65.2	90	67.4	67.4	69.4	72.5
⑰안 고 름					46	31		38	36	30	57
⑱고 름 넓 이	7.5	7	7.6	5	6.6	6.2	7.5	6.2	5.6	6.8	
⑲무 넓 이					30.4		28		21.5		29.6

특징 : 홍색모시, 관복무, 같은 감 동정, 홀웃

(2619-20도 있음)

[표 3] 실 측 표 (직령포 II)

유물번호		2619-3	2619-5
치 수			
①	총 길 이	115	109.5
②	뒷 품	50	50
③		40	42
⑤		74	70
⑥	화 장	74	57.5
⑦	소 매 길 이	49	28
⑧	진 동	27	28
⑨	소 매 넓 이	25	28
⑩	수 구	20	24
⑪		28	30
⑫	겉 섹 넓 이 상	11	11
⑬		55	59
⑭	겉 섹 넓 이 하	17.5	19.5
⑮	무 넓 이	16	18
⑯		22.5	17
⑰		33	34
⑱	안 섹 넓 이 상	8	8
⑲		54.5	59
㉑	안 섹 넓 이 하	14	16
㉒		28	29
㉓	겉 깃 길 이	27.5	33.5
㉔	안 깃 길 이	36	40
㉕	깃 넓 이	8	7.5
㉖	고 대 넓 이	19.5	18
㉗	동 정 길 이	69	64
㉘	동 정 넓 이	4	3.5
㉙	고 름 길 이	72.54	93.62
㉚	고 름 넓 이	5.5	6.3
㉛	안 고 름 길 이	없음	없음
㉜	안 고 름 넓 이	"	"
㉝	옆 터 짐	"	"
㉞	등바대가로(세로)	"	"
㉟	겉대가로(세로)	"	"
㊱	무	"	"
㊲		"	"
㊳	동 정 위 치	12	11.5
특 징		· 홍색모시 · 같은 감 동정 · 두루마기 형태 · 홑	· 홍색모시 · 같은 감 동정 · 두루마기 형태 · 홑

참 고 문 헌

高麗史 中,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2.
 國朝五禮儀, 景文社, 영인본, 1979.
 耆社契帖,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도록 (5), 1976.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73.
 大典會通(譯, 註), 고려대학교, 1960.
 文化財管理局, 朝鮮時代宮中服飾, 1981.
 法制處編, 經國大典, 부산: 부산일보사, 1961.
 成倪等 編, 樂學軌範 冊3, 古典刊行會, 京城·昭和 8
 年 사진판.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1968, 영인본.
 李康 七編, 韓國名人肖像大鑑, 탐구당, 1972.
 李京子, "別監服小考", 韓國衣類學會誌, Vol. 2, No. 1
 (1978).
 李弘植 編, 國史大事典, 知文閣, 1965.
 朝鮮王朝實錄(太宗, 世宗, 世祖, 宣祖, 英祖, 正祖, 純
 祖, 高宗),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탐구당.
 增補文獻備考 中, 동국문화사, 영인본, 1970.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
 韓國文化史大系 II,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蕙園傳神帖(지정문화재 국보 135호), 탐구당, 1974.
 中國の美術 II, 講談社, 東京, 1978.
 Bradley Smith & Wun go Weng, *China (A History
 in Art)*, Jhon Weatherhill Inc, Tokyo, Japan.